#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48 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이원택·조인철·이기헌

이병진 · 임미애 · 서삼석

최민희 · 정청래 · 이수진

김윤덕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여성가족부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'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 그러나 해당 사업의경우 그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, 지원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.

또한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, 운전면허 정지, 출국 금지,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, 여전히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.8%로 낮은 수준임.

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

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비양육부·모는 양육부·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, 비양육부·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·모의 부모가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,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「민법」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.
- 라.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양육비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.

- 마.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,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는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6조).
- 바.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,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사.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아.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대지급 금액 지불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하여금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자.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차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 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(안 제14조).

##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양육비"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(이하 "미성 년 자녀"라 한다)를 보호·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
- 2. "양육비 채무"란 「민법」 제836조의2 및 「가사소송법」상의 집 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.
- 3. "양육부·모"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.
- 4. "비양육부·모"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.
- 5. "양육비 채권자"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 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 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- 6. "양육비 채무자"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(비양육부·모의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·모의 부모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양육비의 지급 의무) 비양육부·모는 양육부·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양육부·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 우에는 그 비양육부·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5조(양육비 대지급 신청) ①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(이하 "이행관리원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(이하 "양육비 대지급"이라 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「민법」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다.
  - ③ 양육비 대지급 신청의 대상,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제6 조에 따른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
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
- 제6조(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)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
  - 2.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위원장이나 위원의 5분의 1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
  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이행관리워의 장이 된다.
  - ④ 위원회의 조직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양육비 대지급 결정 및 통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육비 대지급 결정의 요지, 양육비 대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통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8조(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·통지된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.
 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 결정·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.
  - ③ 제7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9조(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징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한다.
  - ②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

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- 제10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지급능력을 확인·조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여성가족부장관"은 "이행관리원의 장"으로 본다.
- 제11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・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

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양육비 채무자의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)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·재산등에 관한 자료 및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징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양육비 대지급의 중지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

하여야 한다.

-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재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대지급된 양육비 등의 반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는 액수를 감경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
  - 2.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된 양육비의 반환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 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의 반환 기간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5조(권리의 보호) ①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.
  - ② 양육비로 지급받은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.
- 제16조(벌칙)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
- 제17조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18조(과태료)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 족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제7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